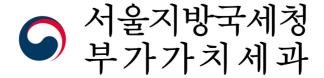
#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2023. 4.



##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155천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152천 명) 보다 약 **3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440천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44천 명) 총 484천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 ~ 24:00
-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 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 (환급금 조기지급) 우리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sup>1)</sup>, **모바일 손택스**<sup>2)</sup>,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sup>\*</sup> ['23.4월 추가]
  -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 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34천 명)에게 제공합니다. 【참고 4】
  - \* ('22년 1기 예정) 24종, 33천 명 → ('23년 1기 예정) 23종, 34천 명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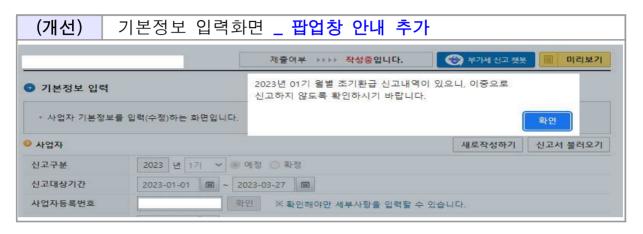
###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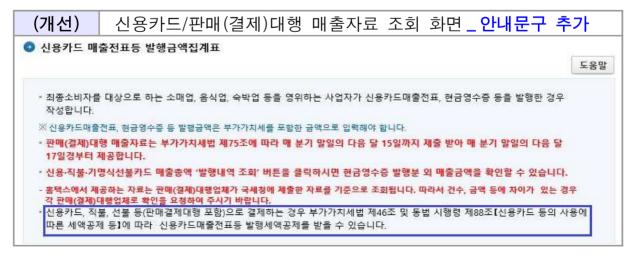
##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중복환급 방지)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 하였습니다.





□ (시스템 변경)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필수 업종(소매업, 음식업, 기타서비서업)은 기본사항 입력 다음 단계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화면을 배치하였습니다.

### Ⅰ화면 배치 순서Ⅰ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사업장현황명세서 상세화면|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신고서 환급계좌) 신고서 환급계좌를 통한 환급금 지급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반영

당 초					7	배 정
□ 신고서 환급계좌 한도금액 ㅇ 5천만원 미만				신고서 한도		좌 한도금액
【개정후 서식】	【개정후 서식】					
② <b>국세환급금 계좌신고</b> ( <mark>환급세액이 5천만원 마만인 경우</mark> )		Ç L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한 사항을	부가가치	) 수임제한 대성 세 신고서 서식 (수임제한 등]		세무사의 수	스임 현황	관리를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u>생년월일</u>	
			시중은행의 1년 대료 이자율 상 <sup>6</sup>		예금 평균 -	수신금리를	· 고려,
		당 초			개 정		
	□ 간주임대. ㅇ 연 1.2%			│□ 간수임I │ o 연 2.9	대료 이자율 1%		
6	불성실	신고자0	세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성실하게 신고할 <b>대한 제공</b> 하고 '		록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C			대해서는 <b>신고</b> !자는 <b>조사대상지</b>				
	조기경보시스	스템'등을	에 대해서는 '부 통하여 철저히 ·업자에 대하여	검 <b>증</b> 하고	, 빅데이터	분석 등을	
		부당환·	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참고 5】		
		— .	가 친·인척을 이용   과다공제 받은		L액거래를 통	해 재활용피	ᅨ자원
	2 토지취득 사례	관련 매입서	네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	매입세액을 부	부당하게 공자	테받은
	③ 무재산자의	의 명의를 병	빌려 사업자 등록	하여 세금 틸	발루한 사례		
		! 근로소득 세금 탈루?	이 있는 원거리 한 사례	거주자를 ㅂ	<b>나</b> 지 사장으로	르 내세워 ź	<b>노</b> 득을
	⑤ 친인척 명 탈루한 사		y거래 사업자를 C	h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	보산 및 관련	세금
			2가 최선의 절서 성실하게 신고		• •		닌 신고

#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9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 10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2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5.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19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디	내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확성선포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작성선포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 (PC)	<ul> <li>대상자: 모든 사업자</li> <li>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li> <li>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li> <li>(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li> <li>(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li> <li>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li> <li>※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li> <li>이용시간: 4.1.~4.25. 매일 06:00~24:00</li> <li>※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li> <li>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li>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ul> <li>대상자: 무실적자</li> <li>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li> <li>※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li> <li>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li> <li>※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gt; 개인신고안내 &gt; 부가가치세 &gt; 동영상자료실</li> </ul>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4.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요 내용
<b>홈택스</b> (PC,모바일)	<ul> <li>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li>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li> <li>"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li> <li>"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li> <li>*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li> <li>*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li>○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b>금융결제원</b>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 <b>융기관</b>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li>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li> <li>*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li> <li>○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b>세무서</b>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4.12	
2		신용카드 매출	23.4.14.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4.17.	
4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3.4.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4.15.	
6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4.11.	
7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4.12.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4.14.	
9	пПО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4.14.	
10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4.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4.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4.14.	
13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4.1.	
14		재고납부세액	-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4.1.	
16	공제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4.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4.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4.11.	
2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4.1.	
24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신규 제공)	23.4.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4.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4.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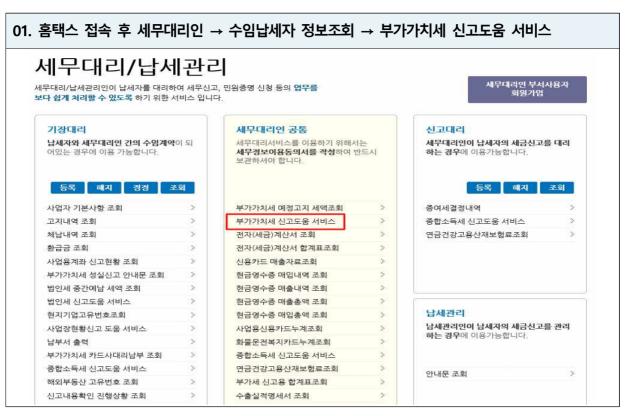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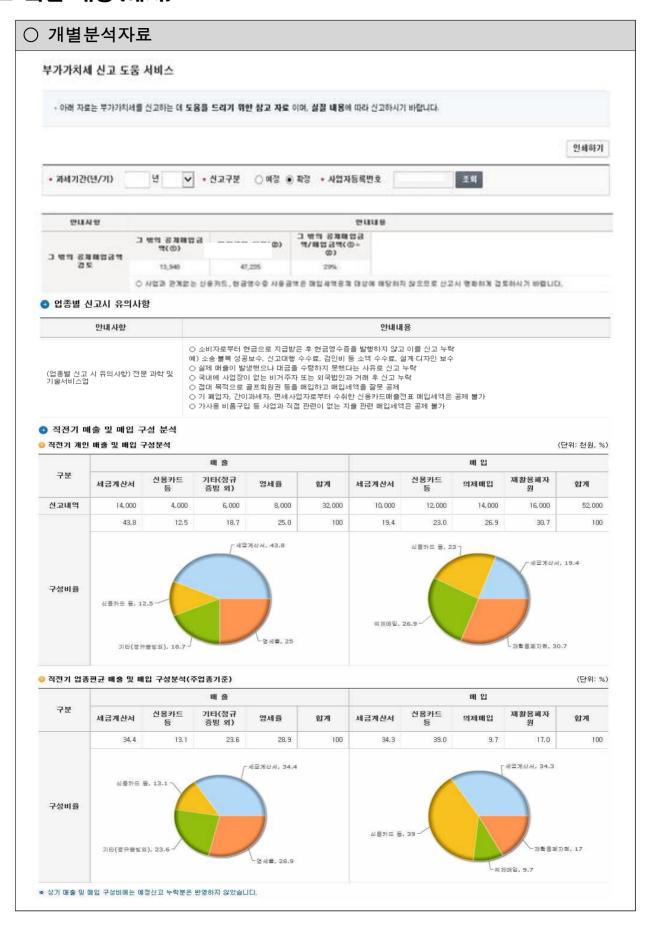
##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 □ 화면 내용(예시)





# ○ 세법해석사례 부가가치세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 이며, 설절 배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년/기) 년 ♥ - 신고구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변호 조희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모판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54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가산세		「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훨벌납부 및 「부가가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처세 납부유에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유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료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서 약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 7호계 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2020.11.20.)			
공통	가산세	「한・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서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 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2021.06.22.)			
공통	가산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 0%)에 의해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며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공통	가산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2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공통	공급가액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저 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할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2021.06.24)			
공통	공급가액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확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 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화석부가-4052, 2021.05.28.)			

## ○ 대법원 주요판례

부가가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 이며, 설절 배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서기간(년/기)
 년
 ✔ • 신고구분
 ○ 예정 • 학정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인쇄하기

###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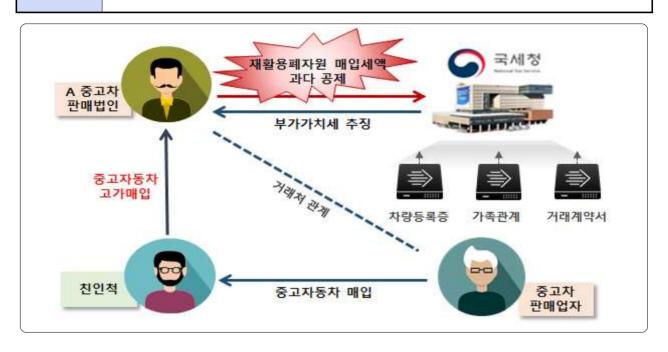
원고	세목	판 시 사 항			
조0속 외 1 (2020두40914)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사설인 오피스템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권O모 외 3 (2020두43289)	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정 <b>○범</b> (2020두44749)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체 <b>○</b> 경 (2020두42637)	부가	<ul> <li>'다중주택'으로 건축하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하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li> </ul>			
감이임 외 3     부가       2020두44725)     부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원고		광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석○원 (2017두49157)	부가	원고는 A로부터 업무용 모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을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모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로부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장한 처분은 적법함			
OOOOO유한 책임회사 (2021두39447)	부가	• 물류회사와 대행서비스계약을 채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원고 본점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 사례 1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부당환급)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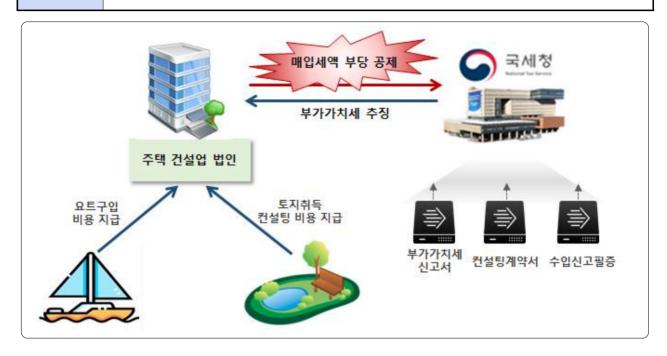
-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화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 □ 확인 결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 사례 2

##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지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부당환급) 공제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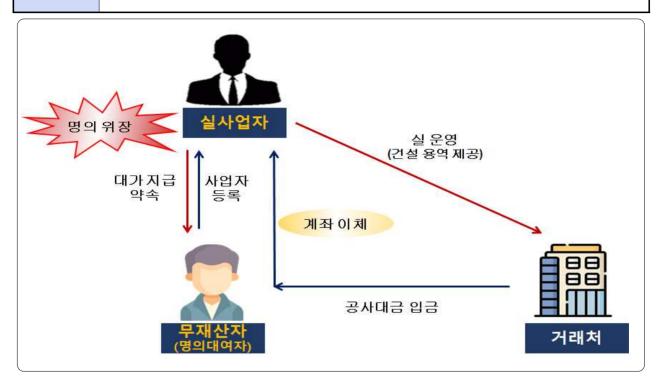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함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 □ 확인 결과

-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검토한 결과.
  -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 사례 3 (명의위장)

##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 실사업자인 △△△은 ○○○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 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 
  -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이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4

##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명의위장]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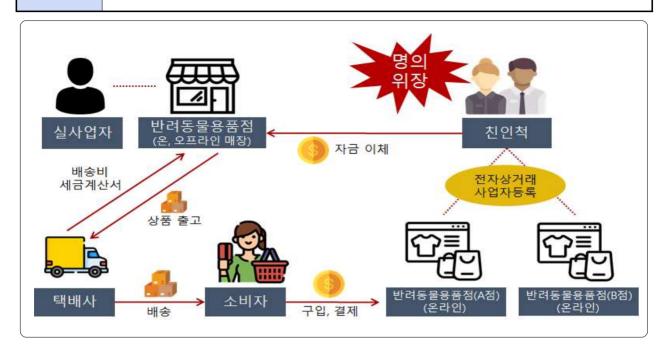
- □□□은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
- □□□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 ○○○ 명의 음식점을 □□□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 하자 □□□가 실사업자임을 시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백만원 통고처분

# 사례 5

##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 [명의위장] 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 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 등록
-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하여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
  -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하여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 (조세범처벌법§11)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